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1. 개회 및 인사말씀

2. 2021년 제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2021년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1월~5월 결산보고
- 사회적 고립가구 똑똑 안내
-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4월~6월 운영보고 및 진행사업 보고
-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7월~9월 운영보고 및 예정사업 보고
- 보고사항 (백신접종 휴가 부여 및 보조금 탄력 운영)

3. 2021년 1월~8월 결산보고

[복지관]

세입					세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비율(%)	관	항	예산액	결산액	비율(%)
사업수입	사업수입	76,310	20,948	27.4	사무비	인건비	965,469	610,186	63.2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1,333,294	1,056,361	79.2	사무비	업무추진비	5,600	1,801	32.1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58,500	119,728	204.6	사무비	운영비	126,080	51,432	40.7
전입금	전입금	50,000	11,200	22.4	재산조성비	시설비	39,700	4,235	10.6
이월금	이월금	85,833	89,009	103.7	사업비	사업비	462,867	355,017	76.7
잡수입	잡수입	29,470	25,573	86.7	잡지출	잡 지출	1,000	0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32,691	23,963	73.3
세입 합계		1,633,407	1,322,819	80.9	세출합계		1,633,407	1,046,634	64

※세입세출1월~8월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승인 전 금액으로 추경확정후 예산액 반영하여 추후 결산보고 예정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별교실]

세입					세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비율(%)	관	항	예산액	결산액	비율(%)
사업수입	사업수입	32,160	9,130	28.4	사무비	인건비	182,520	108,385	59.4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200,937	143,485	71.4	사무비	업무추진비	1,210	170	14.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3,650	1,413	38.7	사무비	운영비	15,340	9,428	61.5
전입금	전입금	2,000	0	0	재산조성비	시설비	4,600	383	8.3
이월금	이월금	11,530	17,801	154.4	사업비	사업비	44,449	7,228	16.3
잡수입	잡수입	100	115	115	잡지출	잡지출	150	0	0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0	2,720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2,108	750	35.6
세입 합계		250,377	171,944	68.7	세출합계		250,377	129,064	51.5

*세입 : 사업수입(50%운영으로 이용수입감소), 이월금과 잡수입은 추가경정예산 통해 조정 예정

*세출 : 사업비(50%운영 및 코로나로 외부활동 및 치료프로그램 진행 자제) / 과년도지출- 2019년 코로나로 이용료 환불 진행

4. 2021년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추가경정 예산 보고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5.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범사업 소개

복지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범운영



- 사업명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범사업
- 추진기간 : 2021년 7월~ 12월
- 추진대상 : 서울시내 25개 복지관 (강서구 단독 선정)
- 사업비 : 8,000천원
- 추진기관 : 서울시청,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공동협력 추진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이 3대 기능(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제공)에서 확장하여 지역으로 나가 주민과 협력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사업

6. 2021년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7월~9월 운영보고 및 진행사업 보고

7. 2021년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2021년 10월~12월 운영보고 및 예정사업 보고

8. 보고사항

◆ 직원 상벌 시행 세칙 변경

변경전	변경 후
제2절 직원 징계	제2절 직원 징계
<p>제2조 (징계)시설장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40px;">1~8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p> <p style="padding-left: 40px;">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p> <p>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문란하게 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변경〉</p> <p>제2조 (징계)시설장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40px;">1~8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9.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원 인권을 침해한 자</p> <p style="padding-left: 40px;">10. 이용자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한 자</p> <p>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문란하게 한 자</p>

[운영위원회 실시 모습]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 준수하며 회의진행하였음.